

생활용품의 자체검사(제70조, 제78조 관련)

1. 품목별 원자재 검사항목

품목명	원자재 검사항목		관리방법
	자재명	검사항목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	·경도 ·비중 ·인장강도 ·신장률	1. 주 자재별로 검사항목을 정하여 규격수준 이상으로 시험검사한 후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쿠션용고무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땀용고무(사용할 경우)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고무풀용 고무(사용할 경우)	·인장강도, 경도, ·신장률	2. 공급선의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용제(사용할 경우)	·비중 ·비등점	
	·재생용 타이어	·겉모양 ·흠집의 크기 및 개소 ·세퍼레이션 ·비이드절손 ·기타결점 ·스틸코드검사	
2. 가정용 압 력냄비 및 압력솥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3.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알루미늄합금 자재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스테인리스 강봉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열간압연스테인리스 강판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4. 자재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냉간압연스테인리스 강판	·겉모양 ·치수 ·인장강도	
	·조립부품(볼트, 너트, 스프링류등)	·겉모양 ·종류 ·치수	
	·합성수지품 또는 고무류	·겉모양 ·치수 ·위생성	5. 자재의 검사 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6. 사내 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자재관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

	·손잡이재료	·겉모양	하고 있어야 한다. 7. 새로운 자재투입 시 마다 검사주기로 하고 1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8. 원자재의 검사는 공급업체에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3. 가스라이터	·원료(수지)	·조성률	
	·라이타용 가스	·배합비	
4. 물놀이기구	·원단(PVC, 고무등)	·두께	
		·인장절단하중	
		·인열강도	
		·가열감량	
		·내한성	
		·오존열화시험	
		·유해원소의 용출	
	·공기마개(벨브)	·기능	
	·노받이 및 노	·강도	
5. 비비탄총	·줄 및 끈류	·치수 및 강도	
	·금속	·내식성	
	·버클 및 기타부착물	·기능	
	·작은부품	·강도	
	·부력제(폼)	·열안전성	
		·압축성	
		·물리적성질	
	·프라스틱수지	·무게	
	·탄환	·직경	
	·스프링	·탄성	
	·실린더 등 부품	·강도시험	

2. 품목별 공정검사 항목

품목명		공정검사 항목		검사방법
		공정명	항목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고무풀 제조	· 점도	1. 각 공정별로 규정된 검사 항목에 대하여 공정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성형공정	· 겉모양	
		· 가황공정	· 겉모양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판재의 경우	· 절단	· 겉모양 · 치수	2.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
		· 성형	· 겉모양 · 치수	
		· 기계가공	· 겉모양 · 치수	
		· 연마	· 겉모양	
		· 조립	· 겉모양 · 압력조정장치 · 안전장치	
				3. 제품의 품질이 규격

	주물 및 지금의 경우	· 용해	· 화학성분 · 온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 주조	· 겉모양 · 온도	
		· 기계가공	· 겉모양 · 치수	
		· 연마	· 겉모양	
		· 용접	· 겉모양	
		· 조립	· 겉모양 · 압력조정장치 · 안전장치	
3. 가스라이터		· 수지 사출가공	· 상태	4. 사내표준에 따라 검사·관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 공정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금속부 가공	· 상태	
		· 조립	· 조립강도	
4. 물놀이기구		· 원단가공	· 치수 · 접착부강도 · 상태	5. 공정검사의 주기는 품목별 특성에 맞게 규정하여야 하나, 로트별로 투입 초기, 중간, 최종 공정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인쇄	· 표시사항 · 염소로 소독된소금물에 견디는 정도 · 침시험 · 땀시험 · 접착강도	
		· 접합	· 구조 · 상태	
5. 비비탄총		· 사출(냉각포함)	· 표면상태	
		· 조립	· 구조 · 낙하강도	

3. 품목별 제품검사 항목

품목명	제품검사 항목	검사방법
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1. 최종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를 한 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2. 수입, 공정검사와 겹치는 항목에 대하여는 제품검사를 생략해도 좋다.

		3.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규격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3. 가스라이터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4. 물놀이기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4. 시험 검사자가 규격 및 사내 표준에 따라 시험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비비탄총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전 항목	5. 검사의 주기는 새로운 로트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단, 유해물질검사는 원자재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